

시민고충처리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사례 (의견표명)

□ 민원 제목 : 금연구역 지정요청(△△△길)

□ 신청 취지

○ △△△길 일대 금연구역 지정요망

- 골목에 커피숍과 밥집이 있어 식사 이후 골목골목에서 담배를 피우고 꽂초와 칩 등 바닥에 버리고 가 동네가 지저분해짐
- 또한 앞쪽 편의점 옆 벤치는 남녀 가리지 않고 담배를 피움
- 어린이도 많이 거주하고 있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소해 주기 바람

□ 사실관계

- 현장확인 결과 골목에서 담배를 피우는 자를 발견할 수는 없었고 골목은 비교적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었음
 - 골목 입구 맨홀 안쪽을 확인한바 담배꽂초 2~3개가 확인됨
- 민원인이 말한 편의점 옆 공간은 식탁과 의자가 하나로 포개져 있었고, 위 공간에서 담배를 피우는 자는 목격됨

□ 관계 법령 등

-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
-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

□ 판단 및 결론

- 금연구역 지정은 조례에서 정한 지정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나 △△△길의

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려움

- 민원인의 주장대로 골목이나 편의점에서 지나친 흡연으로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다면 이를 시정, 계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
- △△△길 골목에 금연구역스티커 등을 부착하여 위 구역에서 흡연을 못하도록 유도하고, 편의점에는 업주에게 흡연 관련 주민민원을 설명하여 위 장소에서 흡연 억제를 유도하기 바람<의견 표명>